

#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내무위원회  
1993. 12. 1.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회부일자

. 제출일자 : 1993년 11월 17일

. 회부일자 : 1993년 11월 17일

다. 상정일자 : 제 97 회 정기회

. 제 6 차 내무위원회 (1993. 12. 1.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조영창)

가. 제안이유

- 각종 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시험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기준액을 현실에 다소 근접되게 인상 지급함으로써
- 시험위원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시험관리에 임하도록 하기 위함.

## 나. 주요골자

- 시험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시험수당 지급 기준액을 1994년도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액과 동일하게 개정

### 가. 문제 출제 수당

- 객관식(문항당) 2,200 원 → 2,300 원
- 주관식(1과목위원당) 40,000 원 → 45,000 원

### 나. 문제 채점 수당

- 객관식(문항당) 40 원 → 22 원
- 주관식(10부까지 기본료) 22,000 원 → 25,000 원

다. 면접(실기)시험수당(6급이하) 10,000 원 → 15,000 원

라. 문제편집수당(일당) 6,000 원 → 7,000 원

마. 문제선정심의수당(과목당) 30,000 원 → 35,000 원

### 바. 감시 수당(일당)

- 공 휴 일 9,000 원 → 10,000 원

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 전문위원 윤 태 무 )

충청북도 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
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5항 및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제2조에 의거 각종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시험위원과 시험감독관 및 시험편집요원등에

대해 지급되고 있는 문제출제수당, 채점수당, 면접 및 실기시험수당, 문제 편집수당, 문제선정심의수당, 감시수당 등의 수당지급기준액을 1994년도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현실에 다소 근접되게 인상 지급하려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즉시 타당한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5. 토 론 요 지 : 해당사항 없음

6. 심 사 결 과 : 도 원안대로 의결(참석7인, 찬성7인)

7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
- 신구조문 대비표